

<p>..... (參 照)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중 “소년소녀교향악단”을 각각 “청소년교향악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世宗文化會館 關係公務員 퇴장해도 좋겠습니다.</p>	<p>위한 것으로 施行時期는 94年 7月 21일부터입니다. 다음 根據를 말씀드리면 地方教育自治에 관한 法律施行令 第14條 準用規定에 따라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5條가 準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蘇中天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教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 告)</p>
<p>2.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教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0時 18分) ○委員長代理 蘇中天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教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局長 金東臣 議事局長 金東臣입니다.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教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提案經緯를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 教育委員 張光石委員 外 7人이 發議한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教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이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 第41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審議 議決되었기에 이를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거 서울特別市議會 本회의에 提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改正理由와 主要骨子を 말씀드리겠습니다. 地方自治法施行令이 改正됨에 따라 教育委員會 日費支給基準이 現行 5萬원에서 6萬원으로 引上調整되어 이를 整備 施行하기</p>	<p>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1994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이 인상 조정되어 이를 정비·시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위원의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 ○시행시기 - '94. 7. 21부터 적용한다 4. 근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5. 검토의견 가. 현황 • 본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일비·여비지급과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p>